<논문>

野澤武之助와 근대 한국의 법학교육*

金孝全**

목 차 I. 머리말 Ⅱ. 野澤의 생애와 저작 1. 생애 2. 저작 Ⅲ. 언론에 소개된 野澤 2. 『法政學界』 1. 일간지 3.『朝鮮』 4. 매일신보 Ⅳ. 법학교의 교수진 1. 長連恒 2. 石鑓衡 3. 巖間亮 4. 金教明 5. 梁大卿 6. 秋山幸衛 7. 加古貞太郎 8. 青木好祐 9. 講田勝利 VI. 맺음말

[국문 요약]

이 글은 근대 한국에서 법부 보좌관, 법관앙성소 소장, 법학교 교장 등을 지낸 일본인 野澤武之助의 생애와 저작, 한국 언론에 소개된 그의 모습과 활동 그리고 법학교의 교수진을 살펴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서 수행된 것임.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veritas828@hanmail.net

봄으로써 한일합방을 전후한 격동기의 법학교육의 실상을 탐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보듯이 국내정치에서 실패한 野澤은 도피처로서 한국에 왔으나 사법개혁이나 법학교육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며 오히려 인사행정의 난맥상, 무능하고 안일한 교육정책을 들어내었을 뿐이다. 일본인에 의한 조선의 시정개선의 한 단면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주제어] 노자와 다케시노스케, 법학교육, 법관양성소, 법학교, 근대한국

I . 머리말

구한말의 신문을 보면 "野澤이가…" 또는 "野澤이는…" 하는 표현이 가끔씩 발견된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1906년 대한제국의 법부 참여관으로 와서 1908년에는 법관양성소 소장을 지내고, 1909년에는 법관양성소가 법학교로 교 명을 바꾸자 이곳의 교장이 되고, 다시 한일합방 이후에는 이 학교가 폐교되자 일본으로 귀국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법관양성소나 근대의 법학교육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척되었지만,1) '法學校'나 野澤武之助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더구나 잘못 알려진 글도 있어서 이를 바로 잡고 그동안 불명확하고 궁금하였던 당시의 모습의 일단을 소개하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한일합방을 전후한 시기의 법학교육의 일단과 시대상을 野澤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연구의 대상은 물론 근대 한국과 관련된 것에 한정하며 野澤의생애와 학문적 업적 전부는 아니다.

필자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早稻田大學의 교환연구원으로 체류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愛知大學의 大川四郎 교수의 보고²)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귀중한 자료를 제

¹⁾ 예컨대 김효전, 「신식 법학교육의 태동」(1)(2), 『인권과 정의』 2002년 3월호, 4월호 및 「법관양성소의 실제운용」(1)(2)(3), 동 5, 6, 7월호 및 「법관양성소의 교수진」(1)(2), 2003년 6, 7, 8월호 참조. 이상의 논문은 김효전, 『근대 한국의 법제와 법학』(세종출판사, 2006)에 재수록.

²⁾ 大川四郎、「明治期 一日本人私費留學生がヨーロッパ人に示した大日本帝國憲法論 - 野澤武

공받게 되어 그에 관한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여기서는 노자와에 관하여 그동안 수집하고 기증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Ⅱ. 野澤의 생애와 저작

먼저 노자와의 생애부터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생애

野澤武之助(Nozawa Takenosuke)는 1866년(慶應 2년) 栃木縣(도쯔기현) 眞岡(모 오카)에서 출생하였으며 초명은 竹松(다케마쓰)이다.3) 1885년에 미국으로 건너갔 다가 다음 해인 1886년 시나가와 야지로(品川弥次郎, 1843~1900) 독일 공사 수행 워의 일원으로서 독일로 간다. 1888년 독일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주 뮐하임 시 립공업학교를 졸업한 후 1889년 7월 스위스의 제네바로 간다. 1889/90년 겨울 학 기부터 1892/93년 겨울 학기까지 「노자와 다케마쓰」(Nosawa Takematsu)라는 이름 으로 제네바 대학 법학부에 학생등록을 하고 "rue du Rhône n° 110"와 "rue Saint -Jean n° 7"에 거주하였다.4) 노자와는 1895년 9월 10일에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

之助(1866~1941)がジュネーブ州立大學 法學部に提出した博士號請求論文について-」(法制 史學會 第49回研究大會報告 2001年 10月 14日).

³⁾ 野澤에 관한 자료는 2005년 12월 필자가 제네바 대학에 문의한 것과 2006년 4월과 5월에 걸 쳐 愛知大學 大川四郎 교수가 보내 준 자료에 의거하여 서술한 것이다. 동 교수께 깊은 감 사를 드린다.

한국측의 기록은 김효전, 「법관양성소의 교수진」, 『대학원 논문집』 제27집(동아대, 2002), 98-

필자가 『인권과 정의』 2003년 6월호, 159면에 소개한 노자와의 설명 중 "프랑스에 유학하여 Docteur en Droit의 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는 "스위스 제네바대학"으로 정정한다. 당시 필자 가 참고한 『早稻田大學百年史』 제2권에는 학교 이름이 없고 단지 "Docteur en Droit"만이 적 혀 있으며, 또 상세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 부정확하게 기술하였다.

⁴⁾ 제네바대학 기록보관소(Archives de l'Universite)에서 필자(김효전)에게 보내온 2006년 1월 30일 자 편지.

(Docteur en droit)의 학위를 받았다.⁵⁾ 논문 제목은 「일본의 헌법」(La Constitution du Japon)이며, 같은 해 10월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에는 이름을 「武之助」로 바꾸었다.⁶⁾

1897년 明治法律學校의 강사가 되어 國際私法을 담당하였다. 1898년 3월에는 제5회 중의원의원 총선거에 栃木縣 제1구에서 당선되었다. 의회에서는 山下俱樂部에 소속하였는데 곧 해산되었다. 같은 해 8월에 실시된 제6회 총선거에서 星亨(호시 도오루, 1850~1901)가와 대결하였으나 패하여 낙선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897년 9월부터 1902년까지 東京專門學校(早稻田大學의 전신)에 재직하였으며, 1902/03년도 강사 및 담당과목에 의하면 국제사법을 강의하였다.80 그동안 그는 1898년에는 동경전문학교의 이사와 추선교우가 되고90 한국에 부

⁵⁾ 大川 교수는 "1891년 7월 제네바 대학 법학부에 학생등록을 하고, 다음 해인 1892년 7월 법학사의 학위를 취득하고 계속 공부하여 1895년 7월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불확실하게 적고 있다.

⁶⁾ 그런데 김상수 교수는 「조선고등법원과 현대 한국법 - 조선고등법원의 생성을 중심으로 - 」, 『법과 사회』 23(법과 사회이론학회 편, 2002년 하반기), 100면 본문에서 「野澤武之助. 한국에서는 이름이 雞一이라고도 불려진다」라고 하여 마치 동일인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野澤武之助와 野澤鷄一(노자와 게이이치, 1852~1932)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野澤鷄一는 전술한 토亨에게 師事하고 미국 Yale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으며 1896년 주한 일본 변리공사 사村(고무라)의 주선으로 한국 법부의 고문이 되어 잠시 근무하였다. 노자와 게이이치는 호시 부인의 누이동생과 결혼하여 호시의 義弟가 되어 둘의 관계는 사제지간을 넘어 호시가수감되었을 때 호시 가정의 뒷바라지를 맡아했다. 호시가 암살되자 그의 전기를 집필하는데은 힘을 쏟았다. 野澤鷄一編著, 川崎勝・廣瀬順皓 校注, 『星亨とその時代』 2(平凡社, 1984), 388-391면의 해설 및 김효전, 「사법권의 개혁과 붕괴과정」(하), 『인권과 정의』, 2002년 12월호, 149-150면 참조.

이 해설에 의하면 野澤鷄一는 수기 「我觀記」와 초고인 「閑居隨筆」을 남겼는데 여기에는 家 系와 친족에 관한 서술이 있으며, 또 그의 손자인 野澤安雄(1910년생)는 「祖父雞一の想ひ出」, 「野澤家代代略記」등을 기록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을 참조하면 한국에서의 활동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⁷⁾ 한국 문헌은 윤소영, 「갑오개혁기 일본인고문관의 활동 - 星亨을 중신으로 - 」, 한국민족운 동사학회편, 『안중근과 한인민족운동』(국학자료원, 2002), 121-161면; 문준영, 「1895년 재판소 구성법과 호시 토우루」, 한국법사학회 제87회(2009년 3월 28일) 발표문 참조. 호시의 한국에서의 생활은 有泉貞夫, 『星亨』(朝日新聞社, 1983), 200-205면; 中村菊男, 『星亨』(日本歷史學會編集, 吉川弘文館, 1963), 140-149면 기타 鈴木武史, 『星亨 - 藩閥政治を搖がした男 - 』(中公新書, 1988) 참조.

^{8) 『}早稻田大學百年史』第2卷(1981), 1199 년.

임해서는 서울의 교우회에도 자주 참석한 기록이 보인다.10

또한 1901년에는 자신이 재학하던 당시 제네바대학 법학부장이었으며 후일 동 대학 명예교수이며 동경제국대학 초빙교수인 루이 브리델(Louis Bridel, 1854 ~1942)의 法理學과 泰西比較法制論 두 강좌의 통역을 맡기도 하였다.11)

大川四郎 교수는 1904년 퇴임한 것으로 생각하나, 문부대신 官房秘書課에 서 명치 38년(1905년) 5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傭外國人表"12)에 의하 면, 브리델은 奏任官 대우를 받으며 학위는 Licencie en droit (Lausanne Univ.)이며, 담당학과는 불란서법, 월급은 675圓, 귀국 여비는 975圓, 고용기간은 명치 36년 10월 16일부터 42년 10월 16일까지 6년간이다. 居所는 동경제국대학 구내 11番 館이며, 비고란에 다른 사람들은 '有妻'라고 적혀있으나 그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독신으로 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904년 3월에는 '韓國駐在軍司令部附를 명함'이라고 적힌 年鑑13)도 있고, 또 단순히 '러일전쟁 종군'14이란 표현도 있는데 구체적인 직위는 알 수가 없다.

일본측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법부 대신 李址鎔(1870~1928)이 각 재판소와 감옥의 문란한 상태는 도저히 獨力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일본으로부터 상 당한 고문관을 傭聘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에 적임자를 추천해달라고 주한 특명전권 공사 林權助가 小村壽太郎 외무대신에게 1905년 4월에 稟申한다. 그 후 반년이 지나서 林權助는 다시 10월에 桂太郎 임시 겸임 외무대신에게 법부 용빙 후보자로서 野澤武之助를 추천한다. 내용인즉 "昨年 이래 국제법사무를

^{9) 『}早稻田學報』제12호(1898), 78면.

^{10) 『}早稻田學報』 제152호(1907년), 제163(1908년), 제176호(1909년) 등 참조

¹¹⁾ 브리델에 관하여는 小澤奈々、「東京帝國大學スイス人法學教師ルイ・ブリデルの比較法講 義とスイス民法典紹介」、『法政論究』 제77호(2008) 참조.

¹²⁾ 外交史料館 3-9-3-37 참조.

¹³⁾ 外務省人事課編, 『外務省年鑑』(1931), 97면. "司令部附"란 '사령부 소속'이란 의미이며 구체적 인 직명은 밝히지 않고 있다.

¹⁴⁾ 주 2의 大川四郎의 보고

촉탁하고 주차군 사령부 付로서 당지에 재근하고 있으며 학력 인물 공히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반드시 다분의 보수를 요할 것도 있으며 타일 법부에 本邦人의 고문관을 傭入하는 경우에는 그 보좌관의 1인에 추가할 예정으로 있다"는요지의 보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15)

그러나 법부 고문 한 사람으로서 사법사무 전체가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것도 아니며, 또 이지용이 정말 요청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보다는 일본의 세력이 강화되자 전임자인 프랑스인 크레마지(L. Crémazy, 1837~1910)¹⁶⁾의 續聘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여하튼 野澤武之助는 1906년 12월 한국 정부의 법부 참여관으로 형법교정 관에 임명된다.¹⁷⁾ 國分三亥(고쿠부 상카이)¹⁸⁾의 회고에 의하면, "법무참여관(전

¹⁵⁾ 外務省編纂 外務省藏版, 『日本外交文書』第38卷 第1冊(日本國際連合協會, 1958), 896 및 906 및 325.

¹⁶⁾ 상세한 것은 L. Crémazy, Courumes, Croyances, moeurs et usage en Chine, dans l'Annam et en Corée, 1908 etc. 및 홍순호, 「대한제국 법부고문 L. Crémazy의 임명과정 분석」, 『한국문화연구논총』 36(이화여대, 1980), 333-371면; 동인, 「구한말 외국인 법률・외교고문의 외교사적 연구」, 『월 간 조선』 1980년 7월호, 228-279면; 김효전,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철학과현실사, 2000), 762-765면 참조.

^{17) 1906}년 12월 17일자 관보.

¹⁸⁾ 國分三亥(고쿠부 상카이, 1863-1962)는 1863년(文久 3년) 12월 도쿄에서 출생. 오카야마(岡山) 현 高粱시 명예시민. 1885년 사법성 법학교를 졸업하고 岡山・横浜 각 지방재판소 검사, 甲府・高知・大阪 각 지방재판소 검사정을 거쳐 1908년 한국으로 왔다. 통감부 고등법원 검사장을 거쳐, 한일합병 후인 1910년 10월에는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장과 총독부 사법부 장관을 겸임하였다. 조선총독부 법무국장 등을 역임하고 1920년 퇴직. 이후 錦鷄間祗候, 久 邇宮 宮務 監督, 은행 두취, 궁중 고문 등을 지냈다. 노후에는 二松學舍 이사장, 逗子開成學園 이사장에 취임하여 교육사업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며 橫浜 倉庫 외에 여러 회사의 중역을 겸직하다가 1962년 사망하였다.

일본의 인명사전에서는「한국 정부의 초빙에 의해서 한국 정부 검사총장이 되고」라고 적고 있다(日本人名大事典[現代] 平凡社, 308만). 그의 논설로는「司法權委任に就て」, 『朝鮮』 제41호、1909;「併合と司法制度との關係」, 『朝鮮』 제31호(1910);「司法事務と同化」, 『朝鮮』 제45호、1911;「母國と朝鮮との共通法規の必要を論ず」, 『朝鮮及滿洲』 제78호(1914);「共通法に就て」, 『朝鮮彙報』(1918);「朝鮮の司法制度改革と將來の希望」, 『朝鮮公論』 제6권 6호(1918) 등이 있다. 문헌은 野村正男。『法窓風雲錄』 上卷(朝日新聞社, 1966), 18-30; 『朝鮮司法界の往事

임)에는 野澤武之助군이 임명되고 松寺竹雄 통감부 검찰관이 법무참여관의 촉탁이 되었다. 그리고 법무보좌관에는 中村竹藏을 수석으로 諸君이 임명되었 다"고 하면서 中村의 '법무보좌관 초빙시대의 재판상황'이란 서면을 낭독케 하 고 있다.19)

野澤는 이어서 1908년 1월에는 법관양성소 소장으로 임명된다.

1908년부터 시행한 勅令 제53호의 법관양성소 관제에 의하면, 소장 1인, 교 수와 조교수 각 3인, 간사 1인, 그리고 번역관과 번역관보 및 주사 각 2인을 둔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장에 野澤이 임명되고, 조교수에 石鎭衡, 번 역관 金敎明, 간사에 岩間 亮, 교수에 劉文煥이 임명되었다.20)

소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의 특별한 활동을 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우리나라 개화기의 신소설 작가이자 저술가이며 번역가인 安國善(安明善, 1878~1926)을 도와준 일화가 와세다 대학 동창회보의 교우동정란에 다음과 같 이 기록되어 있다.

"⊙ 安明善 씨(32 政)는 일찍이 國事에 奔走하여 죄가 있어서 오랫동안 流配處에서 신음하였는데, 이번에 韓國 政府의 顧問으로 校友인 野澤武之助씨의 斡旋으로 特赦의 恩命을 받게 된 것은 아주 기쁘게 생각해야 될 것임"의

이처럼 안국선은 野澤의 알선으로 특사를 받게 되었다는 기사는 野澤가 한 국의 법학 교육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계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암 시하는 기록이라고 하겠다.22) 이 기사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인 법관양성소 소장

を語る座談會』(1940年 8月 15日開催),『司法協會雜誌』 第19卷 10, 11號 別冊. 이 책의 한국어 번역 남기정 역, 『일제의 한국사법부 침략실화』(육법사, 1978), 24면 이하 참조.

¹⁹⁾ 남기정역, 『일제의 한국사법부 침략실화』(육법사, 1978), 31면.

²⁰⁾ 관보 제3983호 1908년 1월 29일자.

^{21) 『}早稻田學報』第149號(1907), 55면의 '교우 동정' 참조.

²²⁾ 일진회의 內田良平(우치다 료헤이, 1874~1937)가 1920년(대정 9년) 11월에 작성한「朝鮮統治 問題二就テ先輩並知友各位ニ訴フ」(이 책은 전체 151면으로 되어 있다. 星野良吉編纂、日韓 紛議政略纂論, 명치 15年과 大內暢三, 外交之危機 韓國問題, 명치 33년, 두 책자와 합본하여

의 압력으로 한국 정부는 안국선에게 은전을 베푼 것이 된다.

1909년 11월 법관양성소가 '法學校'로 교명을 변경함에 따라서 소장에서 교장으로 발령이 난다.23)

野澤은 언제 법학교 교장을 사임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는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법학교가 한일합방 이후인 1911년 10월 10일 칙령 제257호에 의해서 폐지되고 같은 해 11월 1일부터 '京城專修學校'로 조직을 변경하였기 때문에,24) 그 후에 그만 둔 것은 확실하다. 오가와 교수는 "언제까지 재직했는가는 미확인"이라고 했는데, 일본 외무성 인사과편, 『外務省年鑑』에서는 "1911년 9월 법학교 폐지로 폐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25) 이어서 이 연감은 "1917년(大正 6년) 9월 외무성 임시조사부 사무를 촉탁함"이라고 적고 있다. 이연감에는 법학교의 폐지 일자 처럼 다소 부정확한 점도 있지만 여하튼 법학교와 폐지와 동시에 그만 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912년부터 1916년까지의 행적은 불분명하지만 본국으로 귀국한 野澤는 1917년 9월 외무성 임시조사부 사무를 촉탁하고, 1918년에는 浦潮파견군 사무를 촉탁하다. 1920년 9월에는 對獨 평화조약 번역의 공로로 훈장을받는다. 1923년 외무성 번역관이 되었다가 1931년 의원 퇴직한다. 1941년 8월 栃木縣 眞岡에서 타계하였다.

¹⁹⁹⁶년 龍溪書舍에서 복각관이 발간되었다.)라는 책자 마지막에는 日鮮關係貢獻人名錄이 있으며 그 중 「명치 27년(갑오) 이후 정변에 연루된 人名」에는 총리대신 金弘集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거기에 安馴壽는 군부대신 동 30년 亡命日本後還被殺」로 적혀 있고, 權潔鎭은「螢」으로 잘못 기록하여「경무사 同年亡命日本後還被殺」로 기록하고 여러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맨 뒷부분에 「安國善學生」이라고 적혀 있다.

¹⁹⁹⁶년 龍溪書舍에서 星野良吉編,『政略纂論』과 大內暢三,『外交之危機 韓國問題』(1900) 등 복각관이 발간되었다.

²³⁾ 관보 제4519호 1909년 11월 1일자 및 대한민보 1909년 11월 12일자.

²⁴⁾ 조선총독부 관보 제342호, 1911년 10월 16일자.

²⁵⁾ 日本 外務省 人事課編,『外務省年鑑』, 1931년 6월, 97면.

2. 野澤의 저작

그의 저작으로는 제네바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일본의 헌법」과 『국 제사법』등 몇 가지가 있으며, 논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1) 『일본헌법론』

野澤의 학위 논문인 『일본헌법론』(La Constitution du Japon, dissertation présentée à la Faculté de droit pour doctorat, par Nosawa Takematsu, Genève, imprimerie Aubert-Schuchardt, Rey et Malvallon, Successeurs, 1895, 188p.)

필자는 이 논문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大川四郎 교수가 간단히 요약 소개 한 부분을 원문과 함께 그대로 옮긴다.26) 이것은 물론 일본인의 입장에서 명치 헌법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고 정리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당시의 일 본인이 서구인에게 자신을 알린 모습의 일단을 엿볼 수 있으며 서구와의 차별 화와 독자적인 진로의 모색에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서문(Préface)에서는 논문 전체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1부 서론 (1ère Partie-Introduction générale)

당시의 일본이 왜 서양의 제도들을 수용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 국 민의 기질, 동 국민이 놓여있던 상황을 개설하고 일본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혁 에 향한 몇 가지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전개.

"문명의 흐름이란 어떠한 저항도 허용하지 않는다. …(중략)… 일본 국민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꺾이지 않기 위해서 상황에 순응하였던 것이다"(Le courant de la civilisation ne tolère aucune résistance. ··· Les Japonaise ont compris ce qu'ils avaient à faire; ils se sont pliés devant les

²⁶⁾ 주 2의 大川 교수 보고

circonstances pour ne pas rompre. Cf., Nosawa, La Constitution du Japon, pp. 13-14.). "… 더구나 일본에 있어서의 근대적 제도들의 도입은 여론에 의해 주도되었 다"(··· l' introduction des institutions modernes au Japon a été précédée par l'opinion publique. Cf. Nosawa, op. cit., p.14).

"일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일본에 가장 적합한 모든 요소를 문명국들 로부터 차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Le meilleur parti pour le Japon est, ··· d'emprunter aux nations civilisées tous les éléments qui lui sont conviennent. Cf., Nosawa, op. cit., p.26). "일본인은 그들의 관습과 도덕이 요구하는 모든 변화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그 제도들을 그들에게 맞도록 만들었다. 이것을 단순한 모 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핵 심적인 것은 결과가 좋다는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 스스로 축하 할 일이다."(Les Japonais ont apporté toutes les modifications que demandaient leurs moeurs et coutumes, et ensuite ils en ont fait des institutions à leur convenance. Est-ce une simple imitation? La réponse n'est pas facile; mais qu' importe.L'essentiel, c'est que le résultat soint bon, et sur ce point nous pouvons nous féliciter. Cf. Nosawa, op. cit., p.30).

"독창성이란 새로운 창조보다 오히려 기존의 요소들을 융합하는 것에서 생 긴다"(··· l'originalité résultate moins de la création que de la combinaison des éléments existants. Cf., Nosawa, op. cit., p.34). "다른 국가들이 크루프와 암스트롱 의 대포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 일본인들은 어떻게 감히 창과 화살로 이에 대항 할 수 있단 말인가? 단지 그들의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없는 봉 건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Comment les Japonais pourraient-ils employer les lances et les flèches, quand les autres nations ··· possèdent les canons Krupp et Armstrong? Ils n'auraient pas pu non plus conserver le système féodal discrédité, uniquement pour garder leur originalité. Cf., Nosawa, op. cit., p.35).

제2부 "일본정치사"(2ème Partie - Notions d'histoire politique du Japon) 개명기 이래 대일본제국헌법, 즉 명치헌법을 공포하기까지의 일본 헌정사를 명치 국왕의 친정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개관한다.

"명치유신 이후, 국가의 생각은 언제나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장래 일본의 독자적인 정부형태는 입헌군주제임을 모두가 확신하고 있었다."(Depuis la révolution, l'opinion du pays marche toujours vers le libéralisme et tout le monde a la conviction que la seule forme du gouvernement futur du Japon est la monarchie constitutionnelle. Cf., Nosawa, op. cit., p.78).

제3부 "1889년 2월 11일 공포의 대일본제국헌법"(3ème Partie - La Constitution du 11 février 1889) 헌법 전문 텍스트에 대한 野澤 나름의 프랑스어 번역을 게 재하고 있다.

제4부 "대일본제국헌법에 대한 검토"(4ème Partie - Etude sur la Constitution) 입 헌군주제를 채택하는 유럽 각국의 헌법전과 비교하고 축조마다 원리와 해석을 설명한다.

제4조의 천황의 "통치권에 대해서". "중요한 순간에는 집행의 신속함과 의지 가 절대적으로 일체되어야 한다. 일 순간의 허비가 군대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 의회를 소집하고 토론이 요구되는 그 순간에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게 될 지 모른다."(L'unité absolue de la volonté et la rapidité de l'exécution étant nécessaire dans le moment suprême, la perte d'un instant pourrait entraîner la perte d'une armée, et le tempe qu' exige la convocation et la délibération des chambres dans un pareil moment pourrait compromettre le sort de l'Etat. Cf. Nosawa, op. cit., p.101).

"여론이란 분명한 경험을 가진 추밀원의 지지를 받는 천황(souverain) 보다도 감정에 치우치기 쉽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의 양원이 천황보다 더 현 명하게 처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럽다"(L'opinion publique est bien plus susceptible d'être entraînée par la passion que le souverain, qui est ordinairement entouré d'un Counseil ayant une certaine expérience. Dans tous les cas, il est fort douteux que les chambre puissent agir, dans cette circonstance, avec plus de sagesse que le monarque lui-même. Cf. Nosawa, op. cit., p.102). 제8조의 "긴급칙령발 포권"에 대해서. "이것은 예외적 권한이므로 쉽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안녕

질서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그 행사가 정당화 될 수 있다"(… c'est un droit exceptionnel, don't il ne peut être fait usage facilement. La nécessité urgente pour le bien public peut seule le justifier. Cf. Nosawa, op. cit., pp.104-105).

제55조에 규정한 "국무대신이 천황을 보필할 의무"에 대해서. "유럽에서 일 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의회제도는 일본에서는 존재 하지 않는다. ··· 각료들은 의회 양원의 다수파와 합의할 의무는 전혀 없다. 그 들의 직무 수행은 토의하는 의회의 신임에 관계없이 천황의 신임에 따를 뿐이 다"(Le régime parlementaire proprement dit n'existe pas au Japon, contrairement à ce qu'on croit generalement en Europe. ··· les ministres n'ont aucune obligation de se mettre d'accord avec la majorité des Chambres; ils peuvent rester en fonctions tant qu 'ils ont la confiance ne de l'empereur, quelle que soit la confiance don't ils jouissent aupres de l'Assemblée délibérante. Cf. Nosawa, op. cit., p.156).

결론(Conclusion) 이상의 고찰에서 헌법전이 일본 국민에게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로, 의원내각제 도입에 대한 회의. "의회제도는 행정권을 일종의 노예로 만들었고, 그 사이 주권의 힘은 입법부로 넘어가 버렸다."(Le régime parlementaire réduit le pouvoir exécutif à une sorte d'esclavage, tandis qu 'il accorde au corps législatif la puissance souveraine. Cf. Nosawa, op. cit., p.177). "감정에 치우치기 쉬운 일본인의 기질과 양대 정당제도의 부재는 이 제도가 자리 잡는데 특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정치인은 의회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행동을 하였다"(le tempérament excitables des Japonais et le manque de deux grands partis politiques sont à considerer comme etant particulièrement défavorables à l'établissement de ce régime. … les hommes d'Etat japonais ont à faire tout leur possible pour empêcher l'introduction de ce régime. Cf., op. cit.).

두 번째로, 천황의 '만세일계'(제1조)와 '불가침'(제3조)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애국심과 함께 진정한 믿음이 국가의 근본 그 자체를 형성한다. … 이러한 믿음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나약함을 가져온다"(une véritable croyance

qui en confondant avec le patriotisme constitute la base même de l'Etat. ··· le relânchement de cette croyance entraînerait nécessairement l'affiblissement de la nation. Cf. Nosawa, op. cit., p.178).

결론으로 끝맺는다.

2) 기타 저작

그 밖의 노자와의 저작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野澤武之助 講述, 『國際私法』, 東京専門學校, 발간년도 없음, 216면.
- (2) 『國際私法』, 출판지와 발간년도 불명, 208면.
- (3) 『國際私法講義』, 明治法律學校, 출판년도 불명, 219면.
- (4) 『國際私法論』, 山口弘一과 공저, 東京專門學校, 1900, 610면의 대저. 이 책은 2010 년 信山社에서 復刻板이 발간되었다.27)
- (5) 세이뇨보 著, 野澤武之助 解說, 『文明史』,東京專門學校 出版部, 출판년도 불명. 이 책은 Charles Seignobos(1854-1942)의 "Histoire de la civilisation"을 번역한 것이다.
- (6) 전술한 브리델의 강의는 野澤武之助 通譯, 『法律原論』이란 제목으로 明治大學出 版部 講法會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전체 346면으로 165면까지 『法律原論』을 서술하 고, 부록으로 『比較法制學』(167-346면)이 수록되어 있다.

Ⅲ 언론에 소개된 野澤

野澤는 주한 특명전권공사 林權助의 배경으로 한국의 법부에 취직하게 되 었는데, 당시의 한국 신문에는 비교적 그에 관한 기사가 자주 보도된 셈이다.

²⁷⁾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15, 672면, 52500엔. 山口弘一의『國際私法提要 完』도 2010년 같은 信山社의 시리즈 別卷 614로서 복간되었다.

몇 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1. 일간지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다.

- 法部傭員 法部 補佐官 野澤武之助氏를 參與官으로 陞任 す 앗더니 該部에서 統監部의 照會를 因 す 야 法務院 檢察 松寺竹雄氏로 參與官囑托을 聘用 む 後에 政府 로 一軆 通知 케 す 얏더 라 ユ 29)
- 參與恤因 法部 參與官 日本人 野澤武之助氏가 平漢 兩裁의 獄情을 視察 を고 言 を되 犯罪人을 科刑 書은 法律에 當然 変事 이오 如此 冷獄에 冒寒被囚刑 宮은 使人慘惻 이니 該 房屋을 修理 溫突刑 한라 한父다라 300
- 參與賞金 法部에서 度支部에 照會 支 繁部 參與官 野澤武之助氏의 年終賞與金 金 依貴通牒 月俸 二百團 十分之五 一百團 全 支給 宮 터인디 今年度 經費 豫算範圍 内로는 果無餘額이기 茲以仰照 支 照亮後에 該額 会 豫算外 支 撥 す す ぐ け み・31)
- 大臣接賓 再昨日 上午 十二時에 法部 參與官 野澤武之助氏가 該部 大臣 李夏 榮氏 私邸에 訪問すぐ고 仝日 下午 三時에 統監府 通譯官 國分哲氏と 參政大臣 朴齊

^{28) 『}황성신문』 1906년 2월 14일자.

^{29) 『}황성신문』 1906년 11월 21일자.

^{30) 『}황성신문』 1906년 12월 4일자.

^{31) 『}황성신문』 1907년 1월 18일자.

純氏 私邸로 訪問すぐ다더라.32)

여기의 통역관 國分哲은 1908년 1월 1일자로 내각 서기관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1일자로 문관보통전형위원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 法官養成所擴張 法官養成所를 擴張す기 爲すい 該部 參與官 野澤武之助氏外 事務官 鷲田與吉氏가 日本 東京 司法省을 視察室 次로 出張す다とい 該 兩氏의 旅費 と 七百九十四圜이라더라.33)
- 效多請勳 平理院 裁判長 洪鍾橋、法部 刑事局長 金洛憲、書記官 金基肇、參與官 野澤武之助 四氏と 職務上에 效勞가 頗多す니 敍勳す라고 法部에서 內閣에 請議すぐ 더라.34)
- 日請必施 法官養成所 教官 尹泰榮氏と 該所 々な 野澤武之助氏의 特請으로 法 官을 被任 で 양다더라.35)

2. 『法政學界』

노자와는 1908년 1월 1일자로 법관양성소 소장에 임명되었다.36) 그는 1907 년 12월 27일에 거행된 법관양성소 졸업식에 참석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성전 문학교 교우회에서 편집한 『法政學界』는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 官立法官養成所는 客年 十二月 二十七日 下午 一時에 第六回 卒業式을 該所 豫

^{32)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5일자.

^{33) 『}황성신문』 1907년 9월 13일자.

^{34) 『}황성신문』 1907년 12월 4일자.

^{35)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27일자.

^{36) 『}관보』 제3970호 1908년 1월 14일자.

備科 講堂에서 設行すぐせ대 其 儀式과 節次가 整制す고 卒業諸氏의 齊齊호 容貌가 頗 히 人으로 호아곰 感이 有케 호더라. 그 概況을 定刻에 法部大臣 高永喜氏, 檢事總長 國分三亥氏, 法部次官 倉富勇三郎氏, 刑事局長 金洛憲氏, 民事局長 李始榮氏 其他 法 部 裁判所 官吏 多數가 式場 左右에 羅立す고 又 卒業生 五十三人은 式場正面에 整列 호 후에 該所長 野澤武之助氏가 登壇호여 簡單호 式辭를 述호 後에, 大皇帝 陛下의 御 眞影을 奉開す고 來賓 及 學員이 最敬禮屋 行き 後에 教授 石鎭衡氏 勅語屋 奉讀す고 又 最敬禮 言行 を 後에 御眞影 3 奉閉 す立 卒業 證書 及 賞品 会 授與 京 後에 該所長の 卒業牛의계 對す야 簡單호 訓示演説을 試す고 法部大臣이 祝辭屋 述す고 法部次官과 檢事總長이 勸勉的 演說을 試す父더라. 然한대 優等이 八人이요, 及第가 四十五人이요, 優等 第一番은 李豊求氏요. 第二番은 金淇正氏러라. 本記者と 該 五十三人 卽 光榮이 有호 卒業辭書屋 受한 諸氏에게 對호야 一言을 寄호노니 諸君은 今日로브터는 學校에 在學호 學員이 아니오 社會上에 完全호 一分子이라. 換言호면 諸君은 學校에 在홀 時 는 學校의 學則이나 守支고 勉强支면 茲에 責任이 極支거니와 一次 學校의 業을 卒支 고 社會에 一出한면 卒然히 天地가 廣濶한야 그 捕着홀 바를 不知홀지로다. 是以로 ㅡ 個 標準을 心裏的으로 定宮을 要홀지니 此는 無他라. 其 學得宮 智識으로 社會를 如何 히 호면 利케 홀가 호는 決心이 문라. 願컨대 諸君은 此를 不忘홀지어다.37)

이 기사에서 보듯이, 법부대신 高永喜(1849~1916), 검사총장 國分三亥, 법부 차관 倉富勇三郎,³⁸⁾ 형사국장 金洛憲, 민사국장 李始榮 등이 참석하고 있다.

^{37) 『}법정학계』제20호(1908), 31-33면. 최종고, 『한국법학사』(박영사, 1990), 85면에도 일부 수록되어 있으나 오자가 많다.

³⁸⁾ 쿠라도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郎, 1853~1948)는 후쿠오카(福岡) 현 출신으로 사법성 법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성 민형국장, 대심원 검사, 오사카와 동경의 각 공소원 검사장을 거쳐 1907년 조선에 와서 법부 차관, 법률기초위원회 위원장, 조선총독부 사법부 장관 등을 지냈다. 1913년 귀국하여 법제국 장관, 추밀원 고문관, 추밀원 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과 관련된 논설로는「韓國司法制度の梗慨」,『東洋時報』 제130호(1909);「韓國司法及警察の委任に關する覺書」,『國家學會雜誌』 제23권 8호(1909);「朝鮮司法制度の改正に就て」,『朝鮮及滿洲』 제50호(1912);「朝鮮の司法制度」(新法令),『國家學會雜誌』 제26권 5호(1912);「朝鮮總督府警察犯處罰規則に就て」,『軍事警察雜誌』 제6권 9, 10, 11호(1912);「朝鮮司法制度の沿革及現狀」,『朝鮮公論』 제1권 4호(1913);「朝鮮に於ける政治の回顧」,『朝鮮』 제125호(1925);

여기에 참석한 인물들은 野澤의 행적을 살펴보는 데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크 게는 당시의 한국 법제와 법학을 연구하는 데에도 필수불가결한 존재들이어서 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간단한 이력이나 저술목록 을 적어 후일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3. 『朝鮮』

1908년 2월의 법관양성소의 모습에 관하여 『朝鮮』39) 제1권 1호의 '重要記 事'에 실린 '韓國法官養成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전 농상공부 자리로 이전한 한국 법관양성소는 소장 野澤40에 이하 幹 事 岩間 亮씨 조교수 秋山幸吉 씨 主事 靑木好祐 씨 외에 韓人 전임교수 1인 조교수 2 인 屬托 교사 3인의 직원으로 생도 50인이 있으며 법률의 전과목 및 일본어 수학을 교수 하고 있으며 본소는 광무 9년 개정 전에는 明律, 大典會通과 같은 것을 교수하던 것을 개 정 후 현금의 신법률학을 교수하게 되고 학년은 2년으로 하고 매년 1월에 시작하여 12월 에 끝나며, 작년 말 처음으로 개정된 교수를 실시하여 졸업생 23명을 내었는데 이들 졸업 생은 우선 금회의 신설 재판소 서기에 채용하고 점차 법관으로 등용하게 되며, 그리하여 목하의 재학생은 2년급으로 하여 본년부터 학기를 개정한 결과 제1년급은 4월에 모집하 고 보통학의 지식이 있고 일본어를 해독하는 자는 시험한 후 입학시켜 수업 연한의 2년에 연장하여 완전한 법관을 양성할 방침으로 교수의 방법도 현재에는 생도 중 일본어를 해

[「]朝鮮の司法制度に關する私見」、『司法協會雜誌』 제19권 11호(1940) 등이 있다. 구라토미에 관한 문헌으로는 『日本近現代人名辭典』(吉川弘文館, 2001), 382면; 『日本人名大 事典』(平凡計、1979)、288円 및『新藤東洋男』、『浮邪地方の近現代史』(浮邪・三井教育耳納會、 2000), 46-84면; 남기정 역, 『일제의 한국사법부 침략실화』(육법사, 1978), 215-219면 등이 있다. 39) 잡지 『朝鮮』은 1908년 3월 창간하였으며 1912년 1월(통권 47호)부터는 『朝鮮及滿洲』로 改題 하여 1941년 1월(통권 398호)까지 발간되었다. 「일제 강점기 최장수 종합잡지」로 불리며, 이 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임성모 편저, 『조선과 만주 총목차·인명색인』, 어문학사, 2007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편자의 해제 외에 박양신의 해제, 단국대 동양학연구소편, 『개 화기 재한조선인 잡지자료집:조선1』, 동 연구소, 2004 참조

⁴⁰⁾ 원문에는 所長「長野澤」으로 오자임.

독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韓語로써 교수하는 것을 점차 일본어에 의거하여 교수하고 일본문의 참고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41)

이 기사는 학칙이 개정되어 신법률을 가르치게 된 것 외에도 교수의 명단에 서조차 한국인을 제외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본어로 가르치게 될 것에 중점을 두어 보도하고 있다.

1909년 11월에는 법관양성소가 법학교로 명칭을 바꾸어 이곳의 초대 교장이된다. 42) 한일합방하는 해인 1910년 봄 같은 『朝鮮』에서는 칼럼 '雜纂' 중에서각 학교를 순례하는 기사(京城の諸學校一瞥)를 실었는데 법학교에 관하여는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당시의 실상을 리얼하게 전해주고 있으므로 전문을 그대로 옮긴다.

"교장인 野澤武之助 군은 와병중이라고 해서 교수 加古貞太郎 군이 우리들의 往訪을 접견했는데 동군은 취임이 얼마 안 되어 다시 學員監인 岩間 亮을 소개하였다. 학원감은 오랫동안 재임하여 아주 상세하게 본교의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것들은 타일 기회를 보아 적기로 한다.

학교의 연혁이나 기타 것은 생략하고 이 학교는 조선의 여러 학교 중 가장 수준이 높은 것인데, 즉 예과 1년, 본과 3년의 제도로서 본과에는 관립고등학교나 외국어학교의 졸업생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되어 있다. 고로 34, 35세의 생도가 적지 않다.

교양의 목적은 본교의 전신인 법관양성소 시대와 동일하며, 법관의 양성에 있으므로 이것을 이전의 졸업생에 비추어 보면 재판소서기가 58명, 판검사 40명이 최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좀 진기하게 생각한 것은 이 학교의 생도로 帶妻하여 살지 않는 자는 전체의 약 1할, 기타는 대체로 有妻者로 그 중에는 손자가 있는 생도도 있다는 것으로

^{41) 『}朝鮮』第1卷 1號(1908), 89년.

⁴²⁾ 융희 3년(1909년) 11월 7일자 관보

모녀가 동시에 입학하는 여학교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由來 의론을 좋아하는 국민으로서 법률은 그들의 가장 恰適한 학문이며 성적도 대체 로 양호하며 이제 岩間 군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논문을 보면 오히려 멋진 일인데, 이것이 여보(ヨボ) 학생(한국인)이 쓴 것인지를 의심케 할 정도. 아울러 누군가 無暗에 권리 의무 를 진작하는 경박한 才子를 내지 않도록 우리들은 특히 당사자에게 희망하여 둔다."43)

이 짧은 탐방기사는 당시의 법학교의 모습뿐만 아니라 법학은 한국인에게 적합하며 성적도 우수한 점 등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외경을 숨김 없이 나타 내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인에게 권리의무의 관념을 진작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망하는 것까지 잊지 않고 있다. 여기의 '여보(크术)'란 표현은 한국인을 지칭하는 것이며, 『朝鮮』誌에서는 약간 비하하는 투로 표기하고 있다. 또 '無 暗'이란 당시의 조선을 무지하고 암묵하다고 본 것으로 조선인에게 권리라든 가 의무와 같은 관념이 전파되어 일본의 조선지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일본인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후술 加古貞太郎 항목 참조).

여하트 교장인 野澤가 와병중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일본의 중앙정계 에 나서고 싶은 그에게 폐교 직전의 법학교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 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당시의 법학교는 학교운영에 관심이 없는 교장 에서부터 법학 전공이 아닌 법학 교수의 임명을 비롯하여 이질적인 학생들의 구성이나 교재의 준비부족 등이 겹쳐서 온전한 결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4. 『매일신보』

한일합방 이후에도 이 학교는 존속하다가 1911년 9월 法學校 폐지로 野澤는 廢官된다. 이에 관한 『매일신보』의 보도는 많지 않으나 몇 가지만 적어본다.

^{43) 『}朝鮮』 제29호(1910년 7월호), 78-79면.

- 教育令과 特種學校 今回에 發布된 新學制는 十一月 一日旦日 實施室 日인日 該令을 實施 で 同時에 法學校 及 外國語學校 工業傳習所 農林學校 等의 特種學校 知何可 處分室と지 是と 姑未詳知 宮日 旣爲 當局에서と 此等 所屬의 變更 又と 設廢에 關す で 一切 確定 変 申 か 有 す る 不 遠 에 發表 되 리 라 리 라 44)
- 各學校의 組織變更 教育令에 伴き 諸般 付則은 勅令으로써 去 十一日 官報로 發表す야 十一月 一日旦日 實施室 터이라는다 此 結果로 朝鮮由來의 教育機關은 大히 變更되지라. 今에 其 大要를 得聞き 左와 如う더라.
 - 法學校と 京城專修學校로 校名을 變更す고 教授科目 等은 前日과 大差가 無す고
- 外國語學校と 此暑 廢止す고 京城高等普通學校에 在來의 生徒暑 收容 (이하생라/45)
- 學校職員任命期 京城專修學校, 高等普通學校 及 其他 各 學校의 校長 及 教職員의 任命은 該 學校規則이 十一月 一日旦日 實施 宮 日인즉 同日 官報 로 發表 で 리라는 日 其 人 課 은 太半 由來의 人員으로 任用 変 다 더 라 46)

여기서 보듯이 한일합병 이후 일제는 법학교를 비롯하여 각종 학교의 기구와 명칭을 변경하는데 이러한 행정의 난맥상은 비단 법학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통치능력의 무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이상의 기사들은 野澤가 한국의 법학 교육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계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암시하는 기록이라고 하겠다.⁴⁷⁾

^{44) 『}매일신보』 1911년 9월 15일자.

^{45) 『}매일신보』 1911년 10월 14일자.

^{46) 『}매일신보』 1911년 10월 20일자.

⁴⁷⁾ 일진회의 內田良平(우치다 료헤이, 1874~1937)가 대정 9년 11월에 작성한 『朝鮮統治問題二就シテ先輩並知友各位二訴ス』(이 책은 전체 151면으로 되어 있다. 星野良吉編纂, 日韓紛議 政略纂論, 명치 15年과 大內暢三, 外交之危機 韓國問題, 명치 33년, 두 책자와 합본하여 1996년 龍溪書舍에서 복각판이 발간되었다.)라는 책자 마지막에는 '日鮮關係貢獻人名錄'이 있으며 그 중 '명치 27년(갑오) 이후 정변에 연루된 人名'에는 총리대신 金弘集을 비롯하여 여러

한일합방 이후, 즉 법학교로 명칭이 바뀌 이후 법학교는 법관양성소 시대보 다도 조선인의 인기는 떨어지고 곧 이어 명맥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선 1911년 4월 말 현재의 법학교의 인적 구성을 보면 교장에 野濹武之助. 교수에 加古貞太郎, 동 長連恒, 동 石鎭衡, 조교수에 金教明과 梁大卿의 다섯 명이다.48) 이 중 加古는 1910년 1월 30일자로 법학교 교수가 된 사람이며, 長連 恒은 일본어 교수이다.

그 마지막 모습을 『毎日申報』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總督의 學校巡視 寺內 總督은 二十二日 午前 八時에 中山 大佐 藤田 大尉暑 隋す아 關屋 學務局長의 案內로 校洞 普通學校로 向す아 수校 門前에서 檜栢 京畿道 長官 代理 櫻井 財務部長 及 府尹代理 同校 職員 生徒의 出迎을 受す고 卽時 各 教授 室을 巡視さ後 學校 職員 及 生徒에게 對す야 一場 訓示暑 與さ後 同校内에서 東西 南北 及 中部의 各 部長을 接見하고 또는 訓示를 與す父고 總督은 更히 法學校에 前往 す야 野澤 校長의 案內로 校內를 一々 巡視す고 職員 生徒에게 對す야 由來로 法律은 往往히 議論에 失す는 傾向이 有す니 如斯京 弊에 不陷す고 實際에 違치 안이 하도록 盡力호야 議論과 實際가 相待호야 講究 研鑽호야 充分히 此屋 活用홍을 期치 아이치 못홀 者라는 旨로 一場 訓諭롤 與학고 十一時에 歸邸한양더라.49

이 법학교는 1911년 9월에 폐교되고 野澤의 이름은 더 이상 언론에 오르지 않게 된다. 법학교는 1908년 11월에 교명을 변경한 이래 불과 1년 4개월 동안 존속하였을 뿐이며 '경성전수학교'로 다시 이름을 바꾸기까지의 중요한 시기에 관한 기록은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 교수진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

사람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거기에 安駟壽는 '군부대신 동 30년 亡命日本後還被殺'로 적 혀 있고, 權濚鎭은 '쓮'으로 잘못 기록하여 '경무사 同年亡命日本後還被殺'로 기록하고 여러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맨 뒷부분에 '安國善 學生'이라고 적혀 있다.

^{48) 『}朝鮮紳士名鑑』(明治 44년), 291면. 이 책은 『朝鮮人名資料事典』 제1권으로서 2002년 日本圖 書センター에서 영인본이 발간되었다.

^{49) 『}매일신보』 1911년 6월 23일자.

해 보기로 하다.

Ⅲ. 법학교의 교수진

법관양성소는 1909년 2월 제6회 졸업생 54명을 배출하고 50) 같은 해 11월 1 일부터는 '法學校'로 교명을 변경한다.51) 이때의 교수 명단은 소장 野澤 외에 교수에는 長連恒, 石鎭衡, 조교수 겸 법학교 학원감에는 전 법관양성소 간사 겸 법관양성소 조교수였던 巖間亮, 조교수에는 전 법관양성소 번역관 겸 법관 양성소 조교수였던 金敎明과 전 법관양성소 조교수였던 梁大卿이 임명되었 다.52)

이 법학교는 1911년 3월 첫 번이자 마지막인 29명의 졸업생을 내고 같은 해 10월 10일 칙령 제257호에 의해서 11월 1일부터 '京城專修學校'로 이름을 바꾼 다.53) 문준영에 의하면 '경성전수학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사립법률학교 중 조선에 있던 유일한 법률학교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1911년 1월의 총독부 고시 제7호 '명치 43년 制令 제7호 제1조에 의한 사립법률학교 지정의 건'을 들고 있다.54) 그러나 법관양성소를 승계한 학교이기 때문에 관립학교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성전수학교는 1912년 3월 첫 번째 24명의 졸업생을 내었다.55) 이후 1916년

⁵⁰⁾ 명단은 관보 1909년 2월 10일자. 『서북학회월보』제1권 9호(1909년 2월), 54-55면의 '學員消息' 에서는 서북 학생으로 법관양성소를 졸업한 여섯 사람의 명단(안승복, 송태용, 김종덕, 길승 연, 조재준, 조종철)을 게재하고 있다.

^{51) 1911}년 10월 10일 칙령 제257호 '법학교를 폐지한다'. 총독부 관보 제342호 1911년 10월 16일

⁵²⁾ 관보 제4519호 1909년 11월 1일자 및 『대한민보』 1909년 11월 12일자.

⁵³⁾ 조선총독부 관보 제342호 1911년 10월 16일자.

⁵⁴⁾ 문준영, 「헌정 초기의 정치와 사법-제2대 검찰총장 김익진의 삶과 "검찰독립" 문제-」, 靑 里 최종고 교수환갑기념 『한국근현대의 법사와 법사상』(2007), 278면의 주 12 참조.

⁵⁵⁾ 문준영은 위의 논문에서 김익진이 1917년 경성전수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였다고 적고 있는 데, 1917년에 새 출발한 경성전수학교에서 기산한 모양이다.

3월까지 제5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1917년부터는 새로이 '경성전수학교'로 출발하였다.56

원로 법조인 鄭求瑛(1896~1978)은 "나는 곧[1911년 - 김효전] 경성(법률)전 수학교에 입학했으나 도무지 공부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57)고 술회하면서 괄호 속에 법률을 넣어 표기하였다.58)

먼저 1911년(명치 44년) 4월 말 현재의 관공립학교 교원 명부59) 중 '法學校' 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校長	1等 2級	勳 6 野澤武之助
教授	4級	正 6, 勳 4 加古貞太郎
司	5級	正7 長連恒
司	5級	石鎭衡
助教授	7級	金 教 明
同	7級	梁 大 卿

여기서 보듯이 교장과 일본문학을 전공한 長連恒을 제외하면 법학 교수는 4 인에 불과하며 이 중 3인이 한국인이다.

법관양성소와 법학교에 부임한 순서대로 이들의 인적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 기로 한다.

⁵⁶⁾ 서울법대 동창회, 『회원명부』(1985), 48-54면 참조.

⁵⁷⁾ 정구영, 「조선변호사회」(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 1973년 12월 18일자.

⁵⁸⁾ 이영석편, 『정구영 회고록』(중앙일보사, 1987), 8면에서는 '경성법전' 출신이라고 적고 있으 나 엄격히 말하면 '경성전수학교'이다. 정구영은 1911년 입학하여 자퇴하였다가 재입학하여 1919년에 졸업하였다. 정구영, 「조선변호사회」, 『중앙일보』 1973년 12월 19일자.

^{59) 『}명부』 291면.

1. 長 連恒

그는 문학사로서 1904년 9월부터 와세다대학의 강사로서 국문학을 닦당하기 도 하였으며 강사 초대회 같은 모임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보인다.60) 이 기사로 미루어 볼 때 長 連恒은 野澤와 같은 와세다 대학에 근무한 인연으로 그의 추 천으로 한국에 온 모양이다. 더구나 법관양성소든 법학교든 모두 법학을 전공 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에도 문학사인 그를 교수로 채용한 것은 아마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 같다.

그는 1908년 4월 6일자로 법관양성소 교수 진임관 3 등에 임명되었다.61) 관 보에 나타난 서임 및 사령을 그대로 옮겨 혼란했던 당시 모습의 일단을 그대로 전하기로 한다.62)

任法學校長 敍奏任官 一等 前法官養成所長 野澤武之助 ▲ 任法學校 教授 敍奏任 官三等 前法官養成所 教授 長連恒 仝 石鎭衡 ▲ 任法學校 助教授 兼 法學校 學員監 敍奏仟官四等 前法官養成所 幹事 兼 法官養成所 助教授 巖間亮 ▲ 任法學校 助教授 敍奉任官四等 前法官養成所 飜譯官 兼 法官養成所 助教授 金教明 法官養成所 助教授 梁大卿(十一月 一日)63)

• 連恒旅費 法官養成所 教官 日本人 長連恒氏의 召喚 旅費 二百圜을 法部에서 度 支部에 請撥を양더라.64)

법관양성소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운동회에서 그는 학생을 구타하는 등 민족 적 차별을 하여 학생들의 반발을 시는 등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에 관 한 신문의 보도는 아래와 같다.

^{60) 『}早稻田學報』 제107호, 1904년 10월 1일자, 38면.

⁶¹⁾ 관보 제4040호, 1908년 4월 6일자.

⁶²⁾ 관보 1909년 11월 1일자. 인용은 『대한민보』 1909년 11월 12일자.

^{63) 『}대한매일신보』1909년 11월 12일자.

^{64) 『}황성신문』 1908년 4월 17일자.

- 日師請退 再昨日에 法官養成所에서 成均館 不闡堂에 前往すぐ 運動會를 開す 얏는대 障碍物 運動時에 該所 日本教授 長連恒이가 其時에 運動審判官으로 運動하던 學徒 權輝淵을 無端히 拳敺足틱하야 至於重傷き 故로 運動은 姑舍す고 壹般學徒 等이 壹齊 激動すぐ 當場 爻像이 大端 危險すぐ다는 다 昨日 上午 九時에 該 學徒 等이 壹軆 會同호야 所장의게 請願호되 長連 敎授를 解任호 然後에야 上學호고 若 不解任이면 貳 百餘名 學員이 膏膏 退學하び다 ㅎ며 何時던지 此 事가 解決되기 前에 ト學す는 者가 有 で 円 不可以 人類 로 待之 라고 方在 是鬱이라더라 (5)
- 所長報部 法官養成所 學徒가 日本人 教授 長連恒氏를 解任す던지 本 學生等을 退學で던지 兩端間에 歸正で라고 該所에 請願で父더니 該 所長이 其 事實을 擧で야 再 昨日 法部에 報告すぐ다더라.60
- 法大論難 法官養成所 學徒가 尙今 上학지 아니す는 事件에 對す야 度支大臣 趙 重應氏가 論難호되 學徒가 敎師의게 매맛기도 例事오 敺迫을 受홍도 例事인대 如是相
- 退學決議 法官養成所 學徒 等이 教師 長連恒 事件으로 幾日間 上學치 呆宮은 累々 報道훈 바어니와 詳問훈즉 該 學徒 等은 法部에서 退學하기로 決定이 되얏다더 라.68)
- 法徒上學 法部에서 法官養成所 學徒를 退學す라 홍은 別項과 如す거니와 該 學 生 等은 協議す기를 す徒 中에 程度가 優勝さ 人으로 教師를 推選す고 壹般 任員을 組 織す아 本日早日 普成專門學校 壹隅를 借得す아 上화す기로 す얏다는대 教授時間은 上 午 五時半으로 同 八時半 収지로 定すぐ다더라.69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에서 보듯이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불화는 계속된 것 같다.

^{65)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31일자.

^{66) 『}황성신문』 1908년 6월 5일자.

^{67)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7일자.

^{68) 『}대한매일신보』1908년 6월 13일자.

^{69)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13일자.

• 學員更試 法官養成所에서 日昨에 學期試驗을 擧行す다가 日人 大廳直이가 該 학員 一人이 出去すど 거슬 挾雜이 有す다고 捉囚코 でと 事에 對すぐ 該 학員이 壹 齊退出すぐ 應試치 아니힛더니 其 向에 有何措處인지 昨日에 該 학員이 應試すぐ다더 라,70)

長連恒은 법관양성소가 법학교로 명칭을 변경한 후인 1909년 11월에도 계속 하여 법학교 교수 진임관 3등에 임명되었다.

2. 石鎭衡

석진형은 1877년 서울 근교인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으며, 22세 때인 1899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의 和佛法律學校(현재의 法政大學 전신)에 입학하여 1902년 7월에 졸업하였다.71) 그 뒤 곧 귀국하여 1904년 11월 말경 군부 군법국 주사로 관계에 들어갔으며, 1905년 한일보호조약이 締結되어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그는 법부의 법률기초위원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법관양성소 교관으로 임명되어 채권법과 국제법을 강의하였다. 1906년에는 부동산법조사위원으로 임명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당시 통감 伊藤博文의 법률고문 겸입법조사 사업을 직접 지휘하던 동경대학 교수 梅謙次郎(우메 켄지로, 1860~1910)72)의 통역을 맡았다.

석진형은 보성전문에도 강사로 나갔으며, 1909년 11월에는 법관양성소가 법학교로 명칭이 변경되고 이곳의 조교수가 되었다. 여기서는 일본인 소장 野澤武之助 외에 일본인 교수 長連恒, 조교수 巖間亮, 그리고 한국인 조교수 金教明, 조교수 梁大卿 등과 함께 법학을 가르쳤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도 계

^{70)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7일.

⁷¹⁾ 관련 문헌은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서울대출판부, 2007), 111-125면이 있으나 오자가 너무 많다.

⁷²⁾ 상세한 것은 이영미 편역, 근대한국법과 梅謙次郎, 『동아법학』제39호(동아대, 2007), 289~380면; 李英美, 『韓國司法制度と梅謙次郎』(法政大學出版局, 2005) 참조.

속하여 경성(법학)전수학교의 강사로서 근무하였다.

합방 이후인 1911년에는 충청남도 禮山에 湖西銀行을 설립하는 일에 관여 하여 取締役이 되었고, 그 뒤 조선직조회사, 조선방직회사, 조선제지회사 등의 전무 또는 지배인을 지냈다. 1921년에는 전라남도청 참여관으로 부임한 뒤 1924년에는 충청남도 지사로 임명되었는데, 당시에 발간된『朝鮮施政拾五年 史 에서는 "웅변에 능하고 활동적인 정력가이며, 술 담배도 않고 신지식과 신 사조에 관심을 두는 인물"이라고 논평하였다. 1926년에는 전라남도 지사로 전 임되고 그해에 있었던 昭和의 대관식에도 참석하였다.

그러나 외면적인 親日의 이면에는 일본인과의 마찰과 불화도 있었고, 1929 년에는 마침내 8년간의 관료생활을 청산하고 사표를 내었다. 총독 齊藤實은 석 진형의 청빈함을 알고 그 뒤에도 가끔 私家를 찾아와서 서예와 바둑으로 悠悠 自適하는 모습을 보고 갔다고도 한다.

한일합방 이후 일본에 유학한 조선인 지식인들은 대체로 5년 이내에 모두 관직에서 도태되었다는 연구 보고도 있지만, 석진형이 오랫동안 조선인으로서 는 드물게 도지사까지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대일본제국'의 불멸을 철저하게 믿고 진심으로 '大和的인 心臟'을 가진 것 외에도 제2의 梅謙次郎와 같은 또 다른 유력한 일본인의 후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패전으로 광복을 맞은 후 그는 스스로 '親日한 더러운 몸'이라고 평 가하고 가족도 알지 못하는 강원도 佳谷이란 산골짜기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

석진형의 저술로는 『債權法』과 『평시국제공법』 외에 몇 가지의 논설이 있 다. 채권법에서 그는 한국의 민법전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에서는 저술 동기를 "淺學을 不顧하고 茲에 斯法을 五編에 分하야 其 大綱領을 講述하야 써 剞劂에 付함은 不得已 斯學校에 敎授코져 함이오 公衆社會에 發表함은 아 니라. 他日 學窓의 餘日이 有하거든 此에 修正을 加하야 社會에 公佈함을 自 期하노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국제법의 본질에 관한 참고문헌으로서 高橋作衛의 『平時國際法

論』,寺尾亨의『大日本帝國大學 筆記 國際公法 平時部』,中村進午의『國際公法』,그리고 秋山雅之介의『平時國際公法』등을 소개하고 있다.

예컨대『大韓自强會月報』나『少年韓半島』 같은 애국계몽잡지에 국제법에 관한 논설 몇 가지를 寄稿하였으며, 합방 이후에도 「講和後의 朝鮮經濟問題」 [『半島時論』 第22號(1919)],「合邦二十五年を顧みて」(1935)가 있다. 그 밖에 '槃阿'라는 호를 사용하여 한글로 쓴 『夢潮』라는 소설73)도 남겼으며, 시가집으로 石鎭衡撰,『扶餘古今詩歌集』(1926)74) 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그는 매우다재다능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성전수학교를 사임하고 송별회를 갖는 기사가 『매일신문』75)에 보인다.

3. 巖間亮

巖間亮76은 1908년 1월 1일자로 법관양성소 간사로 임명된 후 같은 해 9월 28일자로 법관양성소 간사 겸임 법관양성소 조교수가 되고,77 1909년 11월 1일 자로 법학교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법학교 조교수 겸 법학교 학원감이 된 사람이다.

4. 金教明

김교명은 1886년생이며 관은 경주. '경성학교졸'이란 기록⁷⁸⁾이 있으나 불명 확하다. 1906년 법부 주사가 되었으며, 전 법관양성소 번역관 겸 법관양성소 조

⁷³⁾ 소재영・김경완 엮음, "개화기소설』(숭실대출판부, 1999), 13-48면에 수록.

⁷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75) 『}매일신문』 1913년 3월 23일자.

⁷⁶⁾ 巖間亮과 岩間亮은 동일 인물이다. 당시의 책자에서는 정자로 '巖間亮'이라고 쓰기도 하고 약자로 '岩間亮'이라고 적기도 한다.

⁷⁷⁾ 관보 제3970호 1908년 11월 14일자.

⁷⁸⁾ 박은경, 『일제하 조선인 관료연구』(학민사, 1999), 163면.

교수를 지냈다. 법학교로 개칭하게 된 이후인 1909년 11월 1일자로 조교수에 임명되고, 한일합병 이후에는 아래 기사에서 보듯이 다른 직으로 전임하기로 내정되었다는 기사가 있다.

• 兩氏의 轉任 法學校園 京城專修學校라 す고 奏任 教授園 教諭라 改稱 頒佈客은 一般 知了すと 바어니와 教諭中 梁大卿 金教明 兩氏と 他職으로 轉任す기를 内定すぐ 다더라.79)

관보의 기록에 따르면 1914년 조선총독부 군수로 임명되었다.80)

5. 梁大卿

양대경은 1884년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笑堂이며 貫은 南原 이다.81) 1903년 2월 일본으로 건너가서 1905년 9월 메이지(明治) 대학 법과에 입학한다. 이 대학에서 3년간 공부한 후 1908년 7월에 졸업하고 귀국한다. 『대 한학회월보』제6호(1908년)에는 그의 약력과 사진이 소개되어 있다.

귀국한 후 김교명과 같은 1909년 11월 1일자로 법학교 조교수에 임명되었으 며, 경성전수학교 敎諭를 지내고 1914년 10월 22일자로 광주지법 판사로 임명 되었다가 1919년 1월 28일자로 대구복심법원 판사를 면직하였다.82)

^{79) 『}매일신보』1911년 10월 24일자.

⁸⁰⁾ 조선총독부 관보 제477호 1914년(대정 3년) 3월 5일자. 문헌은 안용식편, 『일제지방관록』(연 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참조.

⁸¹⁾ 문헌은 이병린, 「애도 양대경 선생」, 김이조, 『잊을 수 없는 법조인』(서초법률, 1998), 37-39면;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서울대 출판부, 2007), 111-125면 참조. 최종고는 위의 책에서 "1885년 4월 19일 평남 순천군 지창면 송남리에서 출생하였다"고 하 는데 다시 검토할 문제이다. 또한 문준영은 법관양성소 출신이라고 하는데 졸업생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 문준영, 「헌정 초기의 정치와 사법 – 제2대 검찰총장 김익진의 삶과 "검찰 독립"문제-」, 靑里 최종고 교수환갑기념 『한국근현대의 법사와 법사상』(2007), 281면의 주 30 참조.

^{82) 『}한국법관사』(육법사, 1976), 180면.

여기서 보듯이 한일합방을 전후로 한 격동의 시기에 법학교육을 담당하였는데 무슨 과목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기록을 찾아보기 보기 어렵다. 당시의 신문에 보도된 기사가 하나 전한다.

• 兩氏의 轉任 法學校園 京城專修學校라 す고 奏任 教授園 教諭라 改稱 頒佈宮은 一般 知了すど 바이니와 教諭中 梁大卿 金教明 兩氏と 他職으로 轉任す기園 内定すぐ 다더라83)

법관양성소나 법학교는 물론이며 일제시대의 양대경에 관한 기록은 별로 발견되지 아니한다.

6. 秋山幸衛

그는 1908년 1월 11일자로 법관양성소 조교수 판임관 4 등에 임명되었다.84) 1908년 2월 19일자로 법관양성소 조교수 겸임 법관양성소 주사가 된다. 1909년 11월 1일자로 법관양성소가 법학교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서 법학교 조교수 겸 서기로 발령을 받는다.

秋山의 교수로서의 활동에 관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부인이 이질에 걸린 기사가 하나 발견된다.

• 法學校의 赤痢病 法學校의 秋山 助教授と 該 校內 公廨에 居接すと다 同 夫人 이 日前 赤痢病에 罹すぐ合으로 卽時 朝鮮總督府 病院에 入院治療케 す고 該校 生徒 一週日 休業을 命すぐ다더라 85)

^{83) 『}매일신보』 1911년 10월 24일자.

⁸⁴⁾ 관보 제3968호 1908년 1월 11일자.

^{85) 『}매일신보』 1911년 9월 8일자.

秋山은 1911년 11월부터 1912년 12월까지 경성전수학교의 敎諭를 지냈다.

7. 加古貞太郎

그는 1910년 2월 3일자로 법학교 교수에 임명되었다.86)

加古는 42세 때에『朝鮮及滿洲』 제89호(1914년)에서 '京城辯護士界의 人 物'87)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다. 1872년 동경에서 출생하였으며, 1898년 (동경) 帝大 법과를 졸업한 후 변호사를 개업하였으나 곧 육군성에 들 어가 법률교관이 되고, 1905년의 러일전쟁 시에는 軍政 사무관 겸 군사법정 판 사로서 종군하고 旅順 요새를 정리하기도 하였으며,88) 러일전쟁이 끝난 후 육 군을 사임하고 청국 정부의 초빙에 응하여 雲南省 法制學堂의 강사로서 부임 하여 청국의 '法律書牛'의 양성에 힘썼다고 한다. 그리고 "1909년(명치 42년) 구한국 정부의 초빙에 응하여 법관양성소의 법률교수로서 조선의 법률서생의 양성이란 임무를 맡았다"고 부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 "언제가 '요보'(조선 인)를 상대로 권리의무를 강의를 반복해도 재미없다고 하여 변호사 간판을 내 걸었다"고 한다. 그는 1915년 서울에서 개업하였다. 언제까지 한국에 체류하였 는지는 알 수가 없다.

8. 青木好祐

아오키는 법관양성소의 주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1910년 11월 3일자 관보 에 교수로 임명되었다.

⁸⁶⁾ 관보 제4593호 1910년 2월 3일자.

⁸⁷⁾ 필자는 'ヒマヤラ山人'이란 가명.

^{88) 1905}년(명치 38년)에는 大連 潦東 守備軍 司令部 軍政 사무관을 지냈다는 기사도 있다. 『朝鮮 及滿洲』第91號(1915年), 81년.

9. 講田勝利

講田은 1910년 10월 법학교의 조교수로 신임 발령을 받았다.89)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나 자료를 얻기 찾기 어려웠다.

V. 맺음말

이상으로 野澤의 생애와 저작 그리고 당시의 한국 언론에 보도된 그의 행적 을 추적하여 보았다. 여기서 몇 가지의 특징을 지적하고 이 글을 맺기로 한다. 먼저 野澤武之助라는 인물의 전체적인 평가는 정치인으로서나 학자로서도 그다지 성공한 편은 아니라고 보겠다. 그는 일본의 중앙 무대에서 국회의원이 나 외교관으로서 활동하고 싶었으나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식민지로 몰락해 가는 조선의 작은 학교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을 뿐이다. 또한 학자로서도 국제 사법에 관한 한 권의 저서와 두 권의 번역서를 출판하였고 학술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관심사인 한국에서의 野澤의 활동 내지 업적은 참여관 으로서나 법관양성소의 소장으로서나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는 부정적인 결론 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일례로서 법관양성소의 교관으로 일본문학 전공자인 長連恒 같은 불필요한 사람을 임명하여 학생들과 불화와 마찰을 일 으키는가 하면, 교과목에도 신구 법률을 함께 가르치며 교과서조차 제대로 갖 추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한국의 사법제도나 법학교육의 개선은 고사하고 폐교 될 때까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있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세 째로 일본의 근대 한국에 대한 고문 내지는 시정개선은 사법제도나 법학 교육이란 하나의 면에서 볼 때 대체로 형식적인 것이며 내용이 빈약한 구호에

⁸⁹⁾ 관보 1910년 11월 3일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철저한 일본인의 조선인 우민정책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오히려 일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법률은 의론을 좋아하는 조 선인에게 가장 흡적한 학문이며 성적도 양호,한 것이다.

요컨대 근대 한국의 법학교육의 일 단면을 고찰한 결과 우선 한일 양국간의 문헌과 자료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법학에서 근대적인 법학으로의 이행과정과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현재 법과 법학 그리고 법률생활 은 확고한 토대 위에 구축되는 것이다(2010. 3.30).

▮ 참고문헌

* 각주에 인용한 것만 열거한다.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관보』.

김효전, 「법관양성소의 교수진」(1),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3년 6월호.

. 『근대한국의 법제와 법학』, 세종출판사, 2006.

남기정 역, 『일제의 한국 사법부 침략실화』, 육법사, 1978.

박은경, 『일제하 조선인 관료 연구』, 학민사, 1999.

안용식 편, 『일제지방관록』,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임성모 편저, 『조선과 만주 총목차·인명색인』, 어문학사, 2007.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서울대출판부, 2007.

『朝鮮總督府 官報』,『朝鮮』,『早稻田學報』

大川四郎 「明治期 一日本人私費留學生がヨーロッパ人に示した大日本帝國憲法論-野 澤武之助(1866-1941)がジュネーブ州立大學 法學部に提出した博士號請求論文 について-1、法制史學會 第49回研究大會報告 2001年 10月 14日.

早稻田大學史料編集所編,『早稻田大學百年史』第一卷, 1978.

小澤奈々、「東京帝國大學スイス人法學教師ルイ・ブリデルの比較法講義とスイス民法典 紹介」、『法政論究』第77號, 2008.

■ 자료 1(大川四郎 교수 제공)

- BORGEAUD (Charles), Histoire de l'Université de Genève—L' Academie et l'Universite de Genève aux XIXe Siècle—Annexes, Genève, 1934, pp. 63-68.
- 2. Université de Genève, Liste des autorites, professeurs, etudiants et auditeurs de l'Université de Genève, semestre d'été 1892—semestre d'été 1895, Genève, Bibliothèque publique et universitaire de Genève, Ac 331.
- 3. Université de Genève, Programme des cours de l'université de Genève, pendant les deux semestres de l'année 1890~1891, 1891~1892, 1892~1893, 1893~1894, 1894~1895, 1895~1896, Genève, Archives de l'Université de Genève (ci-après, AUG), 378. 4 (949. 442) Pro.
- 4. Université de Genève, Catalogue des ouvrages, articles et mémoires publiés par les professeurs de l'Université de Genève ainsi que des thèse présentées de 1873 à 1895 aux diverses Facultés pour l'obtention des grades universitaires, Documents pour servir à l'Histoire de l'Université de Genève, vol. 4, Genève, p.270, AUG, 378. 4 (949. 442) Doc.
- 5. Université de Genève, Procès-verbaux des examens de la Faculté de droit, examens subis dans la session de juillet 1891, avril, juillet et octobre 1892, aout 1895, AUG, cote 1984/17/21, p.65, 69, 71, 73 et 84.
- 6. < Permis de séjours étrangers 1887-1890>, 19981-29950, Archives d' Etat de Genève, cote étrangers Dj. No 3, p.363.
- NOSAWA (Takematsu), La Constitution du Japon, thèse droit Genève, 1895, D (263),
 Bibliothèque de la Faculté de droit de l' Université de Genève (ci-après, BFD Genève),
 cote dr-sys CE/J 34. Oh., p.188.
- 8. LE BON (Gustave), Les 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ples, Paris, 1894, p.186.

- 9. BORGEAUD (Charles), Etablissment et révision des constitutions en Amérique et en Europe, Paris et Thorin, 1893, vi+423p. BFD Geneve, dr-sys A 34. Og.
- 10. GEISENDORF (Oaul-F.), L' Université de Genève 1559-1959, Genève, p.300.
- 11. DUFOUR (Alfred), Histoire de Genève, collection Que-sais-je? No 3210, Paris, 3e edition, 2001, p.127.
- 12. CARONI (P.), et al. L' Unification du droit privé suisse au XIXe siècle, Fribourg (en Suisse), 1986, p.290.
- 13. ELSENER (Ferdinand), "Die Schweizer Rechtsschulen vom 16. bis zum 19. Jahrhundert unter besonderer Berticksitigumg des Privatrechts-Die kontonaler Kodifikation bis zum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 Zurich, 1975, S.444~453.
- 14. KUNDERT, (Werner), "Gesetzgebungsbibliographie Schweiz," HOLFFOEFER (Ernst)/ DOELMEYER (Barbara), "Kodifikation und Projekte," DOELMEYER, "Nationale Rechtsvereineitlichung Schweiz," in: Handbuch der Ouellen und Litaratur der neueren europäischen Privatrechtsgeschichte (Das 19. Jahrhundert), Bd. III/2, Hrsg. von Helmut Coing, München, S.1833~1858, 1859~1960, 1961~2029.
- 15. 『海外旅行下付表』,明治 18年(1900年) 9月 15日, 同 19年 2月 25日, 外務省外交資料館 所藏.
- 16. 手塚晃・國立教育會館編集,『幕末海外渡航者 總攬』第2卷(人物情報編),柏書房,1992 年, p.189.
- 17. 『明治人名辭典 Ⅱ 下卷』,明治 33年刊,1988年 日本圖書センター 復刊. 「のノ十」頁.
- 18. 衆議院・参議院 編集、『議會制度百年史 衆議院議員名鑑』、昭和 37年(1962年)、p.379.
- 19. 同上, 『議會制度百年史 院內會派 衆議院の部』, 平成 2年(1990年), pp.80-100.
- 20. 明治大學 廣報課 歷史編纂資料室編,『歷史編纂資料室報告 第6集 成立期明治大學關 係者略傳』, pp. 1-11.
- 21. 同上, 『歷史編纂資料室報告 第7集 復刻 明治大學 創立關係史料集』, p.10, 58, 60.
- 22. 明治大學百年史編纂委員會編,『明治大學百年史』第1卷(史料編 I), 昭和 61年(1986年), pp.383-437.
- 23. 早稻田大學史料編集所編。『早稻田大學百年史』第一卷, 昭和 53年(1978年), pp.763-764, 1038.

- 24. 同上, 『早稻田大學百年史 第二卷』, 昭和 56年(1981年), p.52, 141, 1199.
- 25. 鄭鍾休著、『韓國民法典の比較法的研究』, 創文社。1981年, p.59, 61.
- 26. 大友敬次・柿原琢郎他編、「朝鮮司法界の注時を語る座談會」、『朝鮮司法協會雜誌』第 19卷 第10-11號 (昭和 15年(1940年)), pp. 3-106에 수록. 특히 p. 5, 23 [남기정 역, 일제의 한국 사법부 침략실화, 육법사, 1978].
- 27. 1999년 9월 24일자 書簡으로 野澤幸子 여사 (栃木縣 眞岡市 在住)로부터 大川四郎에 게 제공한 野澤武之助 戶籍抄本 및 同 家系圖.
- 28. 栃木史編纂委員會編,『栃木縣史』, 通史編 6 (近現代一), 通史編 7 (近現代二), 通史編 8 (近現代三), 昭和 59年(1984年).
- 29. 伊藤博文著・宮澤俊義 校計、『憲法義解』、岩波文庫、昭和 15年(1940年)、2005年 復刊。
- 30. 松本暉男, 身分法學者 ルイ・ブリデルのフェミニズムー『女性と權利』を中心として - 」, 『關西大學 法學論集』 第9卷 第2號, 昭和 35年(1960年), 1月, pp.45-67.
- 31. 大川四郎、「スイス民法典 第1條 第2項の學説史的起源-19 世紀フランス,ドイツ 兩 私法學からの影響」,森田安一編、『スイスの歴史と文化』(刀水書房, 1999年), p.179 -204에 수록. 특히 pp.181-185.
- 32. 石附實著、『近代日本の海外留學』、ミネルヴァ書房、昭和 47年(1972年).
- 33. 山室信一著,『法制官僚の時代-國家の設計と知の歴程-』, 木鐸社, 1984年.

■ 자료 2

Universite de Geneve 40, bd. du Pont d'Arve 1205 Geneve Switzerland Prof. Dr. Hyo-Jeon Kim Waseda STEP 21, Room 803 1-103 Totsuka-machi Shinjuku, Tokyo Japan 169-0071

December 21, 2005

Dear President of Academic Affairs

I am a professor of law at Dong-A University in Busan, Korea. Currently I am a research exchange at Waseda University in Tokyo and will be staying in Japan until August 2006.

In relation to my current research, I wish to inquire about an alumnus of the University of Geneva. According to the document which I have enclosed with this letter, the alumnus is Takenosuke Nozawa(野沢武之助) or Keiichi Nozawa(野沢鶏一, 1852-1932).

He purportedly received his Docteur en droit in Juli 1895 from your institution.

In 1906, Nozawa was appointed the first dean of the Legal Training School in Korea. As a legal scholar I want to accurately verify his date of birth, his doctoral dissertation theme, and any applicable information on his activities while in Geneva.

Additionally, if you could supply any photographs of Dr. Nozawa, I would greatly appreciate this. In both Korea and Japan, there are no reliable authentic documents concerning Nozawa, so thanks in advance for any assistance you can offer concerning this matter.

Sincerely yours

Prof. Dr. Hyo-Jeon Kim Faculty of Law Dong-A University

를 자료 3

ARCHIVES DE L'UNIVERSITE

Rue du Général-Dufour 24 - 1211 Genève 4

Dominique Anne Torrione-Vouilloz L'Archiviste

E-mail: Dominique.Torrione@adm.unige.ch

Tél.: 022/379 77 34 / Fax 022/379 76 01

Prof. Dr Hyo-Jeon Kim Shinjuku, Tokyo

Japon

Genève, le 30 janvier 2006

Concerne: NOSAWA Takematsu

Dear professor.

Nosawa Takematsu has been immatriculated in our university, faculté de droit, from winter semester 1889/90 to winter semester 1892/93. He successively lived "rue du Rhône n° 100" and "rue Saint-Jean n°7".

He obtainded the grade of docteur en droit, on 10th September 1895 and his doctoral dissertation theme was this: "La constitution du Japon - dissertation présentée à la faculté de droit pour le doctorat, par Nosawa Takematsu, Genève, imprimerie Aubert-Schuchardt, Rey et Malvallon, successeurs, 1895".

ı

野澤武之助와 근대 한국의 법학교육 103

Unfortunatly, I can't give you an answer about his date of birth, because his student's file had not been archived. The "série" of the old students's files is uncompleted; there were not a systematic in archival work in the past. I suggest to you to ask this question at the Archives d'Etat du canton de Genève, 1 rue-de-l'hôtel-de-ville, 1204 Genève (archives@etat.ge.ch), who have a stangers's file which contains certainly this kind of information.

Sincerely yours,

Dominique Anne Torrione-Vouilloz L'archiviste de l'Université

Dto wism - 16-19

<Abstract>

Nozawa Takenosuke and Legal Education in Modern Korea

Kim, Hyo-Jeon*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aces the life and work of Nozawa Takenosuke, former legal adviser of Late Yi dynasty, dean of Legal Training School and Law School.

This paper consist of 5 chapters: Introduction, life and work of Nozawa, Nozawas views and activity in newspaper and magazines, faculty members in Law School, and conclusion.

In September 1895 Nozawa obtained the grade of docteur en droit from the Genève university, Switzerland. After returned to home, he elected as member of Representative in March 1898, but soon he defeated in an election due to Parliament dissolution in August same year. Therefore he became an instructor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at the Tokyo Special School from 1897 to 1902.

On the recommendation of a ministe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Hayashi Konske, in December 1906, he get a job as legal advisor at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And then in January 1908 he appointed as dean of Legal Training School, which changed the name as Law School in November 1909. In October 1911 this School was at last closed and newly the "Kyungsung Special School" opened.

As a whole, it is commonly said that Nosawa was neither politician nor scholar sufficiently successful. Also we have to say that his activity and contribution as official

^{*} Professor of Law, Dong-A University.

or teacher in Korea was negative. For example he appointed Japanese majored person as the teacher of Law School, so he troubled with students. In addition to faculty member, curriculum of School was not arranged, text book also not prepared.

In short, so-called Reform and Progress in Korea by Japan came out a fiction.

[Key Words] Nozawa Takenosuke, Legal Education, Legal Training School, Modern Korea

접수일: 2010. 4. 1, 심사일: 2010. 4. 5~4.12, 게재확정일: 2010. 4.20